

학생인권 자치 생활규정 도움 자료 둘!

생활규정안 예시 - 2006 마산 합포 고등학교 개정 생활규정

● 이 자료는 2004년 전교조 경남지부 학생생활국이 주관하고 전교조 경남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가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대토론회 - “입시위주 · 권위주의 문화 속의 학생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자료입니다.

● 비인간적 입시구조와 반인권적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학생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제약받고 있는지, 학생선도(징계)규정,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체벌 규정 등 현행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현실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at the bottom of the page, including the word '인권' (Human Rights) circled in a bubble, and other illegible scribbles and lines.

목 차

I. 학생 선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학생선도 위원회

제3장 징 계

제4장 징계 유형별 운영

II. 학교 생활 수칙

제1장 용 의 복 장

제2장 교내 · 외 생활

III. 학생 체벌 규정

IV. 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2장 학생회 운영 제3장 대 의 원 회

제4장 운 영 위 원 회 제5장 선 도 부 규 정 제6장 지도자문위원회
부 칙

V.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정

VI. 학생회 간부 승인 규정

VII. 동아리 회칙

VIII. 합포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규정

제1장 총 칙 제 2 장 자치위원회의 구성 제 3 장 자치위원회의 운영 제 4 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5 장 분쟁조정 제 6 장 학교폭력의 신고 및 비밀엄수 의무

참고자료 1 학생징계 흐름도

참고자료 2 **참고자료 3**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 및 분쟁조정 흐름도

참고자료 4

2006 합포고 독서치료프로그램

I. 학생 선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합포고등학교 학칙 제30조(징계)에 의거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 원칙)

- (1)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2) 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 (4)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학생선도 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의결)

- (1)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의 자문에 응한다.
- (2) 본 위원회는 학생선도재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학생부장, 징계담당교사, 해당 학급담임), 학생선도위원회(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부장, 각부 부장, 해당 학년부장, 징계담당교사 및 해당 학급 담임), 학생선도소위원회(학생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부교사, 학급담임)로 구성한다.
- (3) 본 위원회 각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부에서 주관한다.

다.

(4) 본 위원회는 위원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특별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주관, 의결한다.

제4조 (기능)

(1)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는 학생선도소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사회봉사」이상의 징계 및 「학교 내 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학생선도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의결한다.

제5조 (사안 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를 하기 전에 학생부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보고 받고 징계 대상자(보호자 포함)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 (재심 부의)

(1)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때 소정의 양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 선도위원회는 차 상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장 징 계

제7조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는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는 7~8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사회봉사 기관과 같이 학교 내 봉사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9일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특별교육이수 기간과 같이 학교 내 봉사로 한다.

(4)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6) (1)~(3)항의 기간 중 휴일, 휴업, 휴교기간은 징계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8조 (방법)

- (1) 학교 내 봉사는 등교시켜 학교 내 봉사지도계획서에 따라 지도해야 하며, 지도 담당교사는 학생부 지도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로 한다.
- (2) 지도담당교사는 사안에 따라 해당 학생을 외부 전문가의 지도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3) 사회봉사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4) 특별교육이수는 사회봉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 (5) 가정학습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장 징계 유형별 운영

제9조 (징계 유형) 징계 유형별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 봉사는 교화와 봉사활동으로 한다.
 - ① 지도교사 상담
 - ② 인권, 인성관련 단계적 독서지도 및 소감문 쓰기
 - ③ 보호자 상담
 - ④ 학교환경미화
 - ⑤ 교구 정비
 - ⑥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 (2) 사회봉사는 교화와 봉사활동으로 하며, 해당 위탁기관은 반드시 상담전문가를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학교(기관) 교육이수
-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 교육기관과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③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④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⑤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⑥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4) 퇴학처분

①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② 퇴학처분 시 학생 징계 대상에는

- ○년 ○월 ○일 퇴학처분(00기관으로 전, 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 이 경우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함.

(5) 가정학습 운영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징 계			
		학교내 봉 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 수	퇴학 처분
예절	(1) 언행이 불손한 학생 (3회)	●			
	(2) 학교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 (3회)	●	●		
	(3) 성행불량이 명확히 확인된 학생 (3회)	●	●		
	(4) 교사를 모독한 학생	●	●	●	●
준법	(5) 학교 공공 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7) 월장을 하거나 무단 외출한 학생	●			
	(8) 불법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			
	(9)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0)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1) 학교의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절취 또는 반출한 학생	●	●	●	●
	(12)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한 학생	●	●		
	(1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수업	(15)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16) 부정행위자는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 전, 후, 좌, 우 학생의 답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학생	●			
	- 손, 발, 신호, 몸짓(동작)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	●			
	- 답을 쪽지(페이퍼)에 적어 타학생에게 전달하는 학생	●			
	- 쪽지(페이퍼)를 미리 준비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	●			
	-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삐삐)등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	●			
	- 고사 중 책상, 걸상, 벽면 등에 기록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	●	●		
	- 남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빼앗아 답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학생	●	●		
	- 고사 중 답을 보여 달라고 폭력, 위협, 협박을 하는 학생	●	●		
- 고사 중 대리 시험을 치르는 학생	●	●	●	●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학년별 지도교사 회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수업	(17) 시험을 거부한 학생 (18)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19)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근태	(20) 사고결과, 사고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21)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22)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23) 15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2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약물	(25) 흡연 또는 음주행위가 상습적으로 적발된 학생 (2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폭력	(27) 신체로 타인을 구타한 학생 (28)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29)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반되는 학생 (30)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금품	(31)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32) 부당하게 금품을 빼앗거나 절취한 학생	●	●		
집단 행위	(33)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법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34)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를 한 학생 (35)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타인을 선동한 학생 (36) 정당한 절차와 이유 없이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기타	(37) 징계기간 중에 또 다른 징계를 받게 될 때, 징계에 불성실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선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 (38)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11조 (심의절차)

본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학생부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보고 받고 징계 대상자(보호자 포함)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사안은 징계를 요구하는 교사의 진상조사와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선도소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2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 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징계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징계학생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 (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부 지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징계사면)

- (1)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징계해제는 학생부장이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 및 학생부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사면을 건의하여 사면한다.
- (2) 징계에서 사면된 학생은 포상 제한을 해제한다.

제16조 (결과처리)

- (1)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협의를 기록, 보관한다.
- (2)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협의를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은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 개정은 다음 (1), (2)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학생회장과 학생부장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고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미합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개정한다.

- (1) 학생회 대의원회의 재적 1/2이상의 개정 요구가 있을 때
- (2) 교무회의를 통한 재적 1/2 이상의 개정 요구가 있을 때

II. 학교 생활 수칙

제1장 용의복장

제1조 (등하교 지도)

- (1) 등교시간은 정규조례시간 전까지로 한다. (단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2) 선도규정을 지키면서 선도부가 교문지도를 한다.
- (3) 교통안전지도 : 교문에서 아래쪽 20M 지점을 지나 하차한다.

제2조 (복장)

- (1) 학교 내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 (2) 블라우스 및 와이셔츠는 무늬가 없는 흰색계통만 허용한다. 단, 7부 소매 블라우스와 티셔츠는 금한다.

- (3) 11월~2월중 동복상의 속에는 넥타이가 보이는 스웨터, 폴라, 목티를 입을 수 있다.
- (4) 11월~2월중 동복 상의 바깥에는 코트, 파카, 패딩류의 외투를 입을 수 있고, 모자가 달린 것도 허용하며, 길이도 제한하지 않는다.(동복착용 시 검정색 타이즈 바지도 허용)
- (5) 코트와 목도리를 허용하되 등·하교 시 명찰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6) 여학생은 바지와 치마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검정색 타이즈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 (7) 교복과 체육복은 규정에 맞게 입어야 하며, 변형해서는 안 된다.
- (8) 남, 여학생은 교내 일과 중 체육복을 입을 수 있다.

제3조 (용의)

(1) 남학생

- 가. 앞머리는 자연스런 상태에서 눈을 찌르지 않을 정도(5cm)의 단정한 형태로 한다.
- 나.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구레나룻을 기르지 않으며 뒷머리는 단정하게 깎으며 옷깃을 넘지 않는다. (완전 삭발, 언밸런스형 두발, 파마, 염색, 젤, 스프레이 사용은 금한다.)

(2) 여학생

- 가. 단정한 머리모양(단발형 및 학생숏컷)으로 한다.
(파마, 웨이브, 염색, 무스, 젤, 착유, 기타 미용품 사용은 금한다.)
- 나. 단발은 당기지 않은 자연스런 상태에서 옆 뒤는 귀밑 7cm정도,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도록 단정하게 한다.
- 다. 머리띠나 핀은 수업 중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한다.
- 라. 색조화장 및 메니큐어 사용을 할 수 없다.

제4조 (신발 및 양말)

- (1)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 (2) 실내화를 신고는 보도블럭(아스팔트에 그어진 노란선)까지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3) 동복 착용 시는 살색 스타킹에 검정색 커버양말을 하복 착용 시는 무늬가 없는 흰색 커버양말을 신도록 한다. (11월~2월중에 검정색 스타킹을 허용한다.)
- (4) 지정된 실내화를 착용하며 허용된 곳에서만 신는다.
- (5) 남·여학생의 발목양말을 허용한다.

제5조 (가방)

- (1) 학생용 가방으로 한다.

제6조 (소지품)

- (1) 휴대폰, MP3, CD플레이어의 사용을 허용하며, 수업시간 및 자율학습 시간에는 사용을 금한다.

- (2) 기초 화장품(로션, 스킨, 투명립글로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3)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의 착용은 금하되 종교적인 것은 착용할 수 있다.
- (4) 음란미디어, 음란서적, 술, 담배, 라이터, 성냥, 환각류의 약물, 매니큐어 등을 소지할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 (1) 이 규정에 위배된 경우 해당사항을 「학생 생활 누가 기록부」에 기록할 경우 해당자에게 알리고 지도한다.
- (2)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본 규정에 준한다.

제2장 교내·외 생활

제8조 (교내 생활 수칙)

- (1) 실내에서 정숙하게 다닌다.
- (2) 교내에서 만나면 누구나 먼저 인사한다.
- (3) 껌과 칩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 (4) 신발의 뒤축을 구겨 신거나 끌고 다니지 않는다.
- (5) 교내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이성교제는 규제한다.
- (6) 실내화는 지정된 곳에서만 신는다.

제9조 등교 후 무단으로 조퇴나 외출은 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는 담임선생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외출증, 조퇴증은 1인 1매 원칙)

제10조 공공물을 파손, 손실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선생님께 보고한다.

제11조 타 학급, 학년에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한다.

제12조 교내 게시물을 변경, 말소,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각종 게시는 사전에 해당지도교사 및 학생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교외의 모든 집회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내 개별 동아리 활동 및 학급활동은 담당지도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학교에서 허가된 동아리 및 공인된 사회시민단체 및 종교단체는 가입 활동할 수 있다.

제15조 금품, 기타 물품의 수집, 거래, 알선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지역의 출입을 금한다.

III. 학생 체벌 규정

1.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①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⑦(교육부 중등81140-78 및 중등81140-181(99. 2. 26))

2. 관계법령

가.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의 ① (98. 3.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⑦ (98. 3. 1)

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의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 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교육부의 학생 체벌 규정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한다.

4.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체벌 지침 : 중등 81140-7369(99.03.18) 참조

5. 본교의 체벌 규정

가. 목 적

교사는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 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본생활 예절을 잘 지키고, 교칙을 준수하며,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록 함에 있다.

나. 방 침

- 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하지 않는다.
- 2) 체벌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숙고 후 실시한다.
- 3) 체벌 시 이유,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잘못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한다.
- 4) 교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학생을 체벌하지 않는다.

다. 시행세칙

- 1) 길이 50cm이내, 지름 2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단체체벌과 언어폭력을 할 수 없으며, 다음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철교 만들기, 책·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7) 체벌의 종류

		가	나	다	라
직접 체벌		2대 이내	5대 이내	7대 이내	10대 이내
간접 체벌	운동장 돌기	2바퀴 이내	4바퀴 이내	6바퀴 이내	8바퀴 이내
	손들고 서 있기	10분 이내	15분 이내	20분 이내	25분 이내
	무릎 꿇고 앉아있기	10분 이내	15분 이내	20분 이내	25분 이내
	지정구역 청소하기	20분 이내	30분 이내	40분 이내	50분 이내

- 8) 체벌 부위 : 발바닥, 손바닥, 종아리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위. 단, 여학생의 경우 종아리 체벌은 삼가 한다.
- 9) 직접 체벌의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선도규정에 따른다.

라. 세부규정

구분	항	위 반 내 용	체벌 종류			
			가항	나항	다항	라항
기본 예절	1	도식				○
	2	교복 착용 상태 불량	○			
	3	명찰, 뺨지 미착용	○			
	4	규정외 신발 착용	○			
	5	규정 복장 위반		○		

	6	규정보다 긴 머리		○		
	7	색조화장행위		○		
	8	목걸이, 반지 등의 악세서리 착용(단, 종교적 장신구는 허용)	○			
	9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10	퍼머				○
	11	염색			○	
	12	무스, 젤리 등 머리에 이물질 도포 행위	○			
	13	수업중 껌, 과자 등 취식 행위		○		
	14	교복 불착용				○
	15	책상, 걸상, 벽 등의 낙서 행위			○	
	16	선생님의 정당한 말씀에 불응하는 행위			○	
	17	선생님에게 불손한(예의에 어긋난) 언행			○	
준법	18	공공 시설물 파손				○
	19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		
	20	실내에서 공놀이 행위		○		
준법	21	자기 임무를 다른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				○
	22	교문을 통하지 않고 등교하는 행위				○
	23	침, 껌 등을 아무 곳이나 뱉는 행위			○	
	24	등교 후 무단 외출 행위			○	
수업	25	자율 학습 시간 지각	○			
	26	수업 준비 미비(수업에 늦게 참석 등)	○			
	27	수업 분위기 저해 행위		○		
	28	수업 교재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		○		
	29	음란미디어 및 서적, 음란비디오 소지 행위			○	
퇴폐	45	음란미디어 및 서적 시청, 탐독 행위				○
	46	지나친 신체접촉의 이성 교제		○		
	47	도박 행위				○
	48	흡연 및 담배,ライター 소지				○

IV. 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체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회는 합포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 임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

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 이 회 회원은 학생 신분에는 맞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학교 행정 사항에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자문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 (기능)

(1) 이 회의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정보,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매점관리위원회, 학교급식협의회, 학생축제준비위원회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도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칙 제·개정)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 (예산·결산) 재정의 예·결산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지도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학생회 운영

제10조 (임원) 이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당해 학년도 3학년
- (2) 부회장 4명 : 당해 학년도 2, 3학년 남녀 학생 각 1명씩을 둔다.
- (3) 제10조의 각 부서 부장, 차장 각 1명

제11조 (부서) 이 회의는 다음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2)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학습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4) 선도부 : 교내에서 학생생활수칙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5) 환경·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 (6) 정보관리부 : 컴퓨터 관리 및 정보에 관한 사항

제12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 (4) 학생회 임원은 매점관리위원회, 학교급식협의회 학생대표로 참여한다.
- (5) 학생회 임원 및 각 부장은 학생축제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13조 (임원 선출 및 자격)

- (1) 회장, 부회장은 매년 12월 중 회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2)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함포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으로 하며, 입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1년 동안 징계 사실이 없었던 자로 한다.
 - 2.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 3. 회장과 부회장 2인 (남녀 각 1인) 및 각 부의 부장은 당해 학년도 2학년에서, 부회장 2인 (남녀 각 1인) 및 각 부의 차장은 당해 학년도 1학년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5조 (학급 학생회 조직) 이회는 각 학급별 학생회를 조직하여 H·R 시간에 운영한다.

제16조 (학급 학생회 운영) 학급 학생회는 급장, 부급장, 서기, 총무부, 학예부, 학습부, 체육부, 선도부, 환경·봉사부, 정보관리부를 두어 학급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원활하게 학급이 운영되게 한다. 학급 학생회의 피선거권, 임기 등은 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3장 대 의 원 회

제17조 (구성)

- (1)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부 부장과 차장, 각 학급의 급장, 부급장, 전체동

아리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단은 학생회장,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18조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계획의 심의
- (2)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생회 규정 개정 요구
-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장단의 운영 위원회 임원 지명에 대한 동의
- (6) 회장단 해임 또는 운영 위원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 (7)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의 수렴과 전달
- (8) 학생회 운영 위원회 부서 통폐합, 신설, 업무 조정에 대한 동의
- (9)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9조 (회의)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월 1회(방학 중 제외) 정기적으로 개최(예정)하며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지도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회의 1주일이나 최소 3일 전에 안건을 전체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 (5) 학급 대의원은 사전에 학급회를 통해 안건에 관한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6)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의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지도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지도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22조 (회의)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선 도 부 규 정

제23조 (구성) 학생회 선도부원은 2, 3학년 각 반 1명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급구성원들에 의해 추천되고 학생회와 학생부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제24조 (임기) 선도부원의 임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5조 (활동 및 의무)

- (1) 교내외에서 학생생활수칙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2) 선도활동 때 사적인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
- (3) 선도부원은 학생에게 어떠한 체벌도 행사할 수 없다.
- (4) 학교 교칙 및 생활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5) 선도부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은 부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6장 지도자문위원회

제26조 (구성)

- (1) 지도자문위원회는 전 교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3) 각 부에 지도자문 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 (4)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제27조 (기능) 지도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 (1)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 재 정

제28조 (회비)

- (1) 이 회의 경비는 매점운영수익금에 의해 학교예산 중 학생자치활동비,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2)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9조 (회계 연도)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집행 및 결산)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지도자문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시행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결정이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V. 학생회 정 · 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정

제1조 (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2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일 1년 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제3조 (선거 방법)

- (1)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 (2) 대의원은 각 학급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4조 (임기)

- (1) 정·부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이 꺾일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조 (선출 시기) 선출 시기는 전 학년도 12월 중으로 한다.

제6조 (선거 비용) 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지출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지도위원,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지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정·부회장에 입후보하지 않은 2학년 각 반 급장으로 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고 사무 일체
 -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6. 입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제8조 (입후보자의 등록)

- (1)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원서
 - 2. 유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서 (단,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 (2)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9조 (선거 운동)

- (1) 선거 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
- (2) 선거 운동 비용은 학생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단, 소견 발표의 시간과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단,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투표 및 개표)

- (1) 투표는 투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 (2)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 인증번호표를 받고 각 반에 배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투표에 참여한다.
- (3) 선거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선거인을 제외한 타인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12조 (당선인)

- (1)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재투표를 거치고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3)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전체 학생 과반 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 (4)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5)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 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제13조 (별칙)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 (2) 대의원 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3)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 (4)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14조 (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VI. 학생회 간부 승인 규정

제1조 합포고등학교 학생회의 간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조 학생회 간부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 대의원
 - 1. 등록일 1년 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출석 사항이 90% 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2) 각 부의 부장·차장 승인 규정

1. 등록일 1년 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출석 사항이 90% 이상인 자로 하되 병결, 기타결석은 제외한다.

제3조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학생회 각부 부장은 학생회장이 지명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5조 학생회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도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Ⅶ. 동아리 회칙

제 1조 (명칭) 이회는 '합포고등학교 동아리(청소년 단체)'라 칭한다.(통상 '동아리'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케 하고 건전한 심성을 도모하여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이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각 동아리(씨클)와 청소년 단체의 회장으로 구성하며,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동아리 지도교사 및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CA를 제외한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제 4조 (회원의 활동과 의무)

- (1) 이회의 회원은 동아리(청소년 단체)를 대표하여 이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제반 학교생활수칙을 솔선수범할 의무를 지닌다.
- (2) 교외 동아리 활동은 학교장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하며, 교내 동아리 활동은 지도교사와 함께해야 한다.
- (3) 건전하고 독립된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회 목적에 따라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 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 (4) 독립된 동아리 활동수칙은 학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5조 (가입과 탈퇴)

- (1) 매 학년도 3월 중 각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 별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 (2) 신규 구성원 모집은 지도교사의 입회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 한다. 단, 지도교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 하며, 지도교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매 학년도 3월초 제14조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의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임원의 구성)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2학년 남녀 각 1명씩) 동아리 대표는 전체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선거로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제 2조에 부합하는 일을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승인기준)

(1) 회장, 부회장은 회원 전체의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임원은 1년 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9조 (활동 지원) 제2조에 따라 동아리활동지원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해 두어야 하며,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를 지원한다.

제10조 (지도자문의 구성과 기능)

(1)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 교감, 문화부장, 학생부장, 동아리담당교사를 지도자문위원으로 한다.

1. 건전한 동아리(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의견 수렴

2. 축제 및 학예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조율

3. 기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도자문

제11조 (활동 정지 및 해산)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도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동아리를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다.

(1)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학교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 (2)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 (3)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가 더 이상 건전한 단체로 볼 수 없을 경우

지도교사의 승인은 동아리 등록원으로 하고 승인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생략)
 각 동아리(씨클) 및 청소년 단체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생략)

Ⅷ. 합포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합포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포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합포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2 장 자치위원회의 구성

제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④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3조 ③항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자치위원회의 운영

제7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상담실 설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 4 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2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 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 ①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 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 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출석정지 기간 중 출결처리는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5 장 분쟁조정

제15조 (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7조 (분쟁조정 개시)

- ① 자치위원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쟁조정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를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교폭력의 신고 및 비밀엄수 의무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합포고등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은 2004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 만료)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라 함은 초·중·고등학교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폭행

-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을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띄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의 개념인·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

※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협의의 개념임(형법 제125조)

※ 본 법령에서 말하는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함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됨

◎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 형법상의 협의의 개념임

◎ 공갈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 감금

-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

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임

◎ 약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 유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

◎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재물손괴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되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

※ 손괴 :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명예훼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괴롭힘(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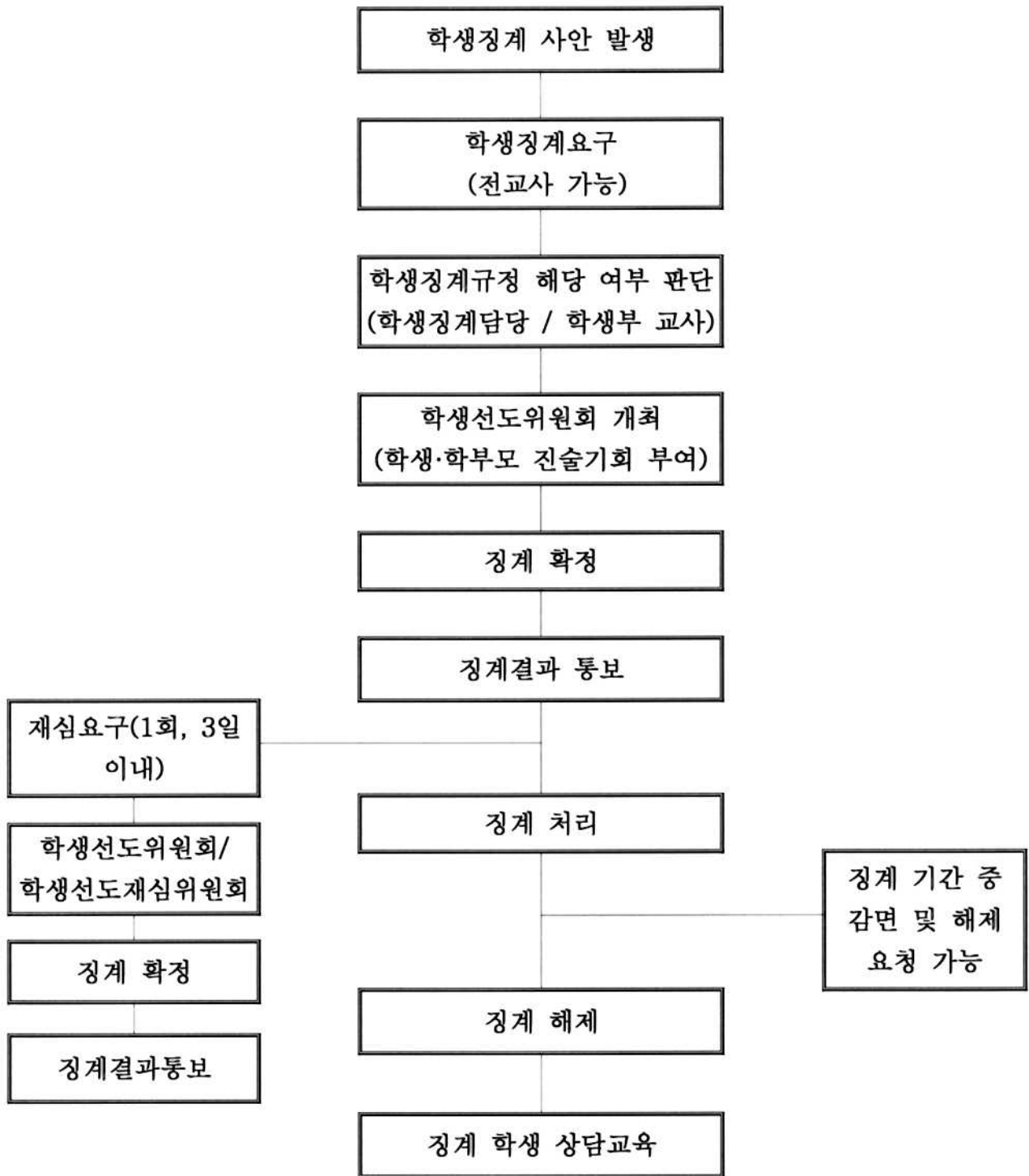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00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직책	성명	비고
위원장	정재표	교장
부위원장	신진용	교감
대책위원	김이호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대책위원	이주호	법무부창원보호관찰소 주무관
대책위원	방영철	마산중부경찰서 담당경찰관
대책위원	김순희	전문상담교사
대책위원	이필우	학생부장
대책위원	송철식	징계담당교사
대책위원	이숙영	평생교육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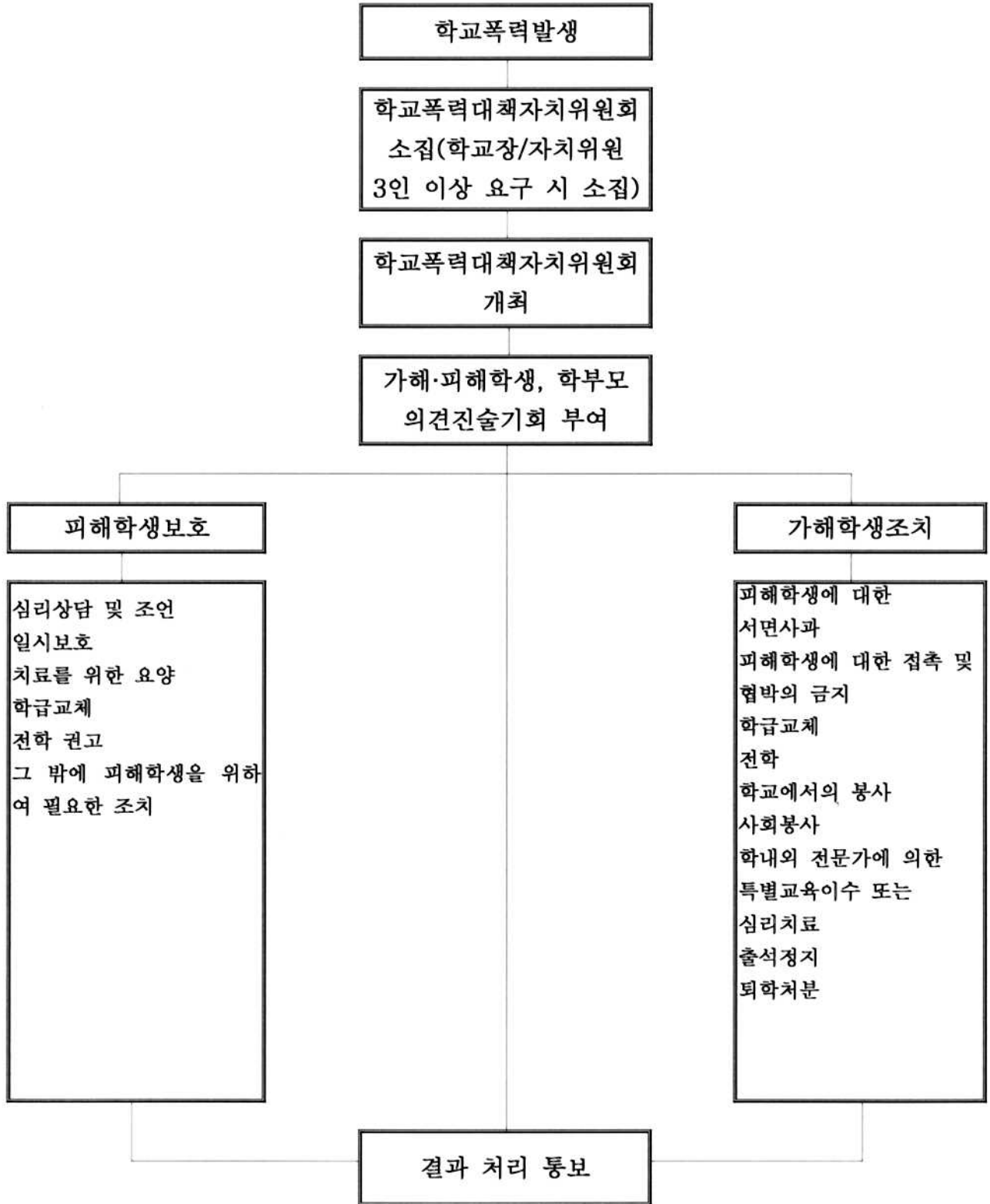
참고자료 1

학생징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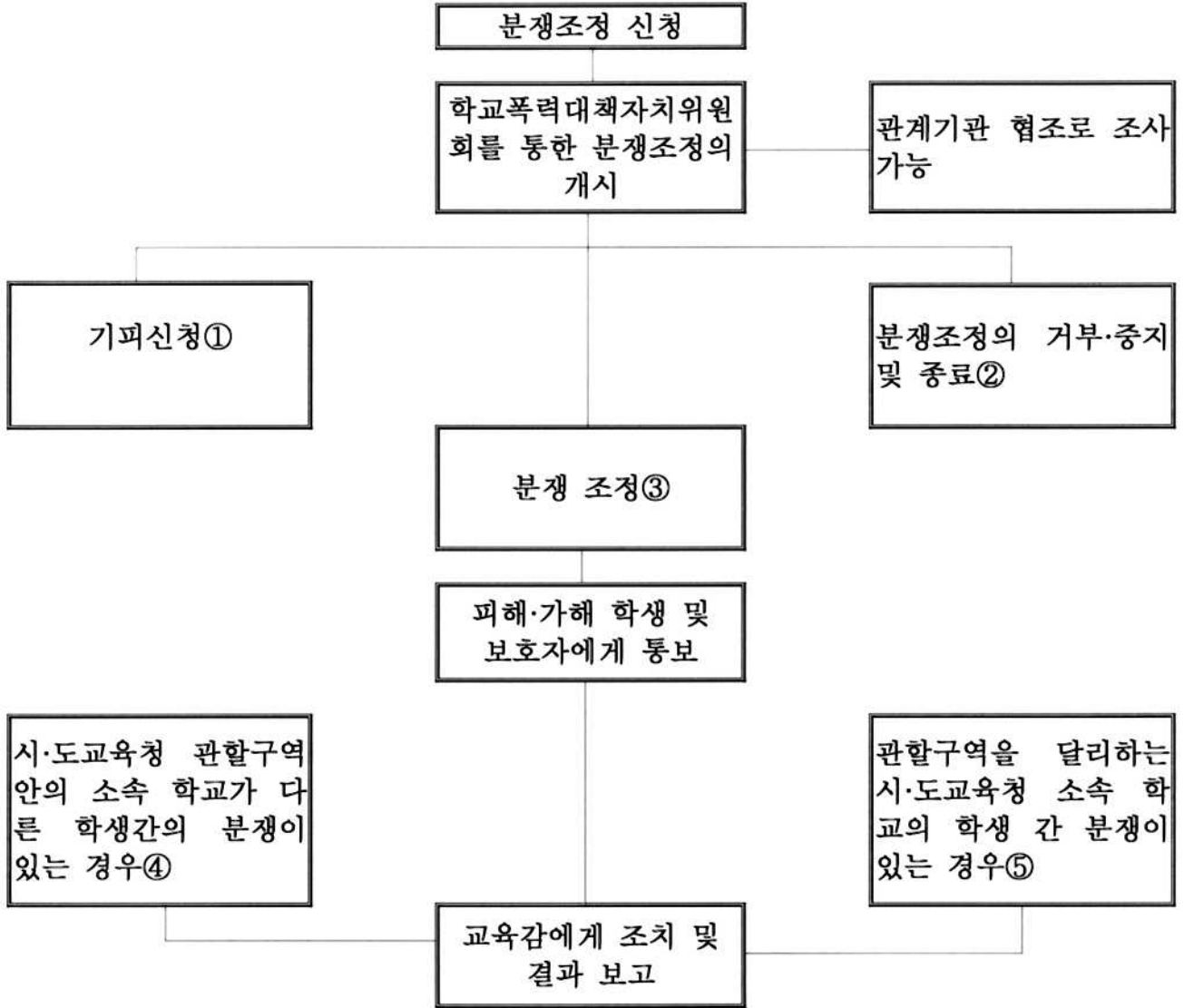


◆ 합포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선도재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 위원과 교감, 학생부장, 징계담당교사, 해당 학급담임), 학생선도위원회(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부장, 각부 부장, 해당 학년부장, 징계담당교사 및 해당 학급 담임), 학생선도소위원회(학생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부교사, 학급담임)로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 및 분쟁조정 흐름도



참고자료 3



①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자치위원회는 동법 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⑤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참고자료 4

2006 합포고 독서치료프로그램

학 생 부

1.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요인은 손상된 자아 존중감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상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켜줌으로써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임기와 치료적 글쓰기 활동을 통해 억압된 마음의 상처를 확인하고 감정의 정화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완화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높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각을 믿는 자아능력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 믿는 자아 가치감을 길러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 하는 데 있다.

2. 참여자의 이해와 활동 내용

1)

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대상 학생 및 징계 대상 학생을 위해 비행 및 문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교육 방법 중 인성, 인권, 가치교육을 통한 자아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와 상담자,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2)본 프로그램은

- 합포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에서 적용한다.
- 치유적 글쓰기는 치유적 책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 치유적 말하기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
- 참여자가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담임, 학부모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3. 독서치료 프로그램 단계적 설계

<첫 번째 단계>-프로그램 소개 및 자아 존중감 검사

목표

본 프로그램의 개요 소개, 인도자와 참여자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감 형성, 참여자의 자아 존중감 정도 파악

매체 선정

김구, 『백범일지』 도진순 역, 돌베개 1997

선정이유

억압된 마음의 상처는 치료적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데는 위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 보인다. 청소년들이 치유의 경험과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필독서를 선정하였다.

내용 요약: 백범일지는 1947년 최초로 출간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전 국민의 필독서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진순 교수에 의해 다시 편찬된 책이다. 백범 김구는 27년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어 온 민족독립운동가이자 자신의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거래의 스승이다. 해방된 통일조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끝내 비명에 간 생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다.

<두 번째 단계>-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

목표

나의 콤플렉스, 나의 페르조나, 나의 그림자 찾기(열등감에 사로잡힌 학생이 겪는 억압과 심리적 고통에 필요)

활동 내용

콤플렉스는 인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페르조나는 겉으로 보여 지는 나의 역할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페르조나에 얽매이면 심리적 고통을 겪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림자는 자아(ego)의 1 숨어 있는 다른 면으로, 일반적으로 억압된 본능이나 욕망은 무의식으로 내려가 자신의 그림자가 된다. 나의 페르조나를 이해하면 현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마음의 아픔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글쓰기'가 필요하다. 나의 그림자를 이해하면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억압된 마음의 상처를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한다.

매체 선정

클레이 본 카슨 엮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이순희 역, 바다출판사

선정 이유

이 책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 생을 불살랐던 한 개인의 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내용 요약

이 책은 세상의 모든 폭력과 억압에 맞선 검은 영웅인 인권지도자 마틴 루터 킹 자서전이다. 바다출판사에서 청소년용으로 다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1955년, 26세에 버스 내 흑백차별에 항의하여 보이콧 운동을 시작한 이후 35세에 노벨상을 받고, 1968년 39세로 암살당하기까지 킹의 생애와 사상이 담겨있는 책이다.

<세 번째 단계>-나의 욕구 알기

목표

자신에게서 어떤 욕구가 어느 정도 있으며,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욕구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를 깨달아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갖도록 한다.

활동 내용

인간의 욕구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 참여자가 어떤 욕구가 강한지를 알기 위하여 '욕구 강도 프로파일(need strength profile)을 작성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물건, 장소, 일, 사람)을 쓰고 그 이유를 작성하여 자신의 개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나의 욕구를 이해하며, 나의 욕구 강도에 따라 타인과 발생한 마음의 상처를 글쓰기 활동을 통하여 치유한다.

매체 선정

도로시 허먼, 『헬렌 켈러: A Life』, 이수영 역, 미다스북스

선정이유: 이 책은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를 위해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위대한 인생지침서이다.

내용 요약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여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헬렌 켈러라고 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그녀가 펼친 선행을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저술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어떤 고민에 부딪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내적 힘을 얻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하고도 고결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네 번째 단계>-나와 타인의 성격 알기

목표

성격의 유형은 다양하다. 각 성격의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다. 나와 타인의 성격차이 이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활동 내용

성격은 마음의 태도, 심리 에너지의 흐름이 안팎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 외향성과 내향형으로 나눈다. 마음이 작용하는 기능에 따라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으로 나눈다. 인간의 성격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기능 중 어느 것을 더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타인의 성격 차이에서 발생한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 친구 소개하는 글쓰기'를 해 보도록 한다.

매체 선정

강영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생명의 말씀사, 2000

선정 이유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한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참여자의 꿈을 구체화 시키며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매체이다.

내용 요약

맹인박사 강영우 박사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인생에는 올라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책은 강영우 교수가 제시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로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라', '분명한 비전을 품으라'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단계>-내 마음에 비친 나 : 자아상

목표

자아상이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말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아 존중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이다.

활동 내용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감정이다.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는 편지쓰기'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손상된 자아 존중감을 치유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편지쓰기' 활동도 필요하다.

매체 선정

필립 C. 맥그로, 『내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박재현 역, 상상북스, 2000

선정 이유

위축되어 있는 자아를 성장시켜 줌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가치있는 인간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용 요약

이 책에서 필립 C. 맥그로 박사는 '인생의 승자는 게임의 룰을 알고 전략을 짠다.'고 충고 한다. 이 책은 삶에 지쳐 낙담한 사람에게 제시하는 인생전략서로 20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유명인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상담의뢰자들과 나누었던 성공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섯 번째 단계>-나의 자아상의 밑거름이 되었던 어린 시절

목표

나의 자아상의 밑거름이 되었던 나의 어린 시절 모습 찾기와 주체적인 글쓰기

활동 내용

갓난아이는 의식적인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의식의 연속성도 없다. 다만 본능에 따라 지배를 받을 뿐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을 구별하기 시작하여 '자아형성'이 시작된다. 어린아이의 정신은 그 부모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에 어린 시절에 상처 난 자아 존중감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란 제목의 글쓰기 활동과 '내가 처음 이성에 관심을 가졌을 때의 일화' 등의 글쓰기 활동을 한다.

매체 선정

오토다케 히로타다, 『오체 불만족』, 전경빈 역, 창해, 2001

선정 이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의 성공기를 읽으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내용 요약: 팔과 다리가 없고 오직 머리와 몸만 있는 히로타다. 이 책은 1976년에 출생해 불굴의 의지로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다니는 저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상실의 시대를 헤쳐 나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일곱 번째 단계>- 현재 나의 자아상

목표

청년기의 맞는 발달과업, 삶의 목표에 대한 의지의 강화

활동 내용

고등학생 시절은 극심한 변화를 맞는 시절로, 불안정하고 초조한 때이다. 즉 제2의 탄생을 위한 사고를 겪는 시절이다. 인생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꿈을 갖는 시절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마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우관계, 직업관, 이성관, 등에 대하여 바른 가치를 가져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글쓰기 활동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하루 생활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고뇌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였다.

매체 선정

블레어 저스티스, 『바이올렛 할머니의 행복한 백년』, 공경희 역, 세종서적, 2001

선정 이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책으로 참여자가 향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용 요약

100세의 평범한 바이올렛 할머니의 행복 비결을 들으면서 인생의 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 바이올렛은 평생 발가락 기형이라는 육체적 고통과 딸의 소아마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통을 극복하면서 100년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그 비력을 감사하는 마음과 유머, 끊임없는 호기심이다.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태도로 살아간다. 이 책은 생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느긋할 수 있고 지혜롭게 늙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한다.

<여덟 번째 단계>-나의 비전 가꾸기

목표

나의 인생관 가꾸어 나가기

활동 내용

나의 인생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활동이다. 처음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적도록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과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글쓰기 활동을 한다. 다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여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한다. 이것을 이루는데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을 고쳐야 할 부분'을 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단계로,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꿈인가', '나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꿈인가'를 적는 활동을 한다.

매체 선정

다릴 앙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류시화 역, 나무 심는 사람, 1999

선정 이유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용 요약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국계 아랍인 명상가가 쓴 바른 삶의 지침서이다. 가장 행복하고 가슴 뛰는 삶에 대한 조언의 글을 비롯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진실함, 미래에 희망을 주는 글들을 질문과 답으로 담아 놓고 있다. 높이 나는 새처럼 멀리 보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 자기 안에서 영혼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중요한 안내서 역할을 한다.

<아홉 번째 단계>-미래의 나의 모습

목표

자서전 쓰기를 통해 나의 꿈이 달성된 미래의 모습을 찾아간다.

활동 내용

인생에는 발달단계에 맞는 과업이 있다. 어린 시절의 발달과업, 청년기의 발달과업, 중년기의 발달과업, 노년기의 발달과업이 있다. 앞 단계에서 읽은 전기 자료에서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모습을 자기 미래의 분신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꿈과 비전이 달성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자서전 쓰기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은 한 평생 자신의 꿈을 향한 여행을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매체 선정

강준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두란노, 2000

선정 이유

이 책은 자신의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좌절된 꿈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내용 요약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다.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꿈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꿈은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책은 자신의 꿈을 통해 좌절과 치유의 경험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 번째 단계>-성숙된 나의 자아 존중감 알기

목표

프로그램을 마치며 나의 자존감은 얼마나 성숙하였는가?

활동 내용

부모님을 초대하여 인도자, 참여자와 함께 다과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활동을 한다.

※ 이 프로그램은 경남교육포럼이 주최한 제3차 교육포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중 '학교폭력의 인성교육적 해결방안'-양재한 교수의 발제문(2005.11)을 토대로 합포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편집한 것이며, 음악, 미술을 통한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